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5. 2. 17.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75호로 2025년 2월 3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나.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식재위치, 식재시기 등(안 제5조~안 제7조)
- 다. 병해충의 방제(안 제10조)
- 라. 식재기준(안 제11조)
- 마. 가로수 보호(안 제12조)
- 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안 제15조)
- 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6조)
- 아.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02.04.~2025.02.1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폭염완화, 미세먼지 흡착 등 도심 속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함. 상위법의 제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규정된 내용 중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시하여 국민들이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들을 정의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기본원칙)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관련 별지2

제1호(기본방향 및 일반기준)을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

시행령 별표2
<p>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p> <p>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p>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안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는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우리 구 가로수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¹⁾하고 있기에 근거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p>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1) 최근 수립 연도는 2021년 6월임.

- 안 제5조(수종선정 기준 등)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진단 조사의 방법 등은 시행령 별표2에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식재위치)는 시행령 별표2 제3호(심는 지역 기준)에서는 국민안전 등을 위하여 식재 불가지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구민의 안전 및 가로수의 보호를 위하여 식재위치를 추가로 규정

시행령 별표2
<p>3. 심는 지역 기준</p> <p>가. 가로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을 수 있다.</p> <p>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의 갓길 2)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3)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4)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해당 시설물 전선의 절연 처리 등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안 제7조(식재시기)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이하 “조성·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규정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p>마. 수목식재</p> <p>(1) 식재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하되, 현장·기후여건·수종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p>

- 안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제1항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가목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은 가로수의 바뀌·메워심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시행령 별표2
<p>4. 관리 기준</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뀌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 안 제9조(가지치기)제1항은 시행령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나목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령 별표2
<p>4. 관리 기준</p> <p>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p>

- 안 제10조(병해충의 방제)는 시행령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다목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병해충 방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시

시행령 별표2

4. 관리 기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안 제11조(식재기준)는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기준과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 조례 제7조(가로수의 식재기준)에 맞추어 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등의 위치,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안 제12조(가로수 보호)제1호 및 제2호는 시행령 별표2의 내용을 참고, 제4호 및 제5호는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

시행령 별표2

4. 관리 기준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객토(客土: 새 흙 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도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규정

시행령 별표2

4. 관리 기준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 안 제14조(점검) 및 안 제15조(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

또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취지가 같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민간위탁)제1항**은 전문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자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으며, **제2항**은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2) 및 3) 「산림조항법」 제108조제1항제2호제라목에 의거 전문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 **안 제1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 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 3) **산림조합법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임업경제사업
 -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 2. 가로수의 옮겨심기
-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원상회복명령 등)제1항**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규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고, 비용의 산정기준은 서울시 타자지구⁴⁾들이 정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p>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p>

- **안 제19조(관리대장)**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관리대장 작성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시

4) (5개)구로, 동대문, 송파, 양천, 은평(※마포구도 해당 규정이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별표가 등록되지 않음)

- 위와 같이 각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히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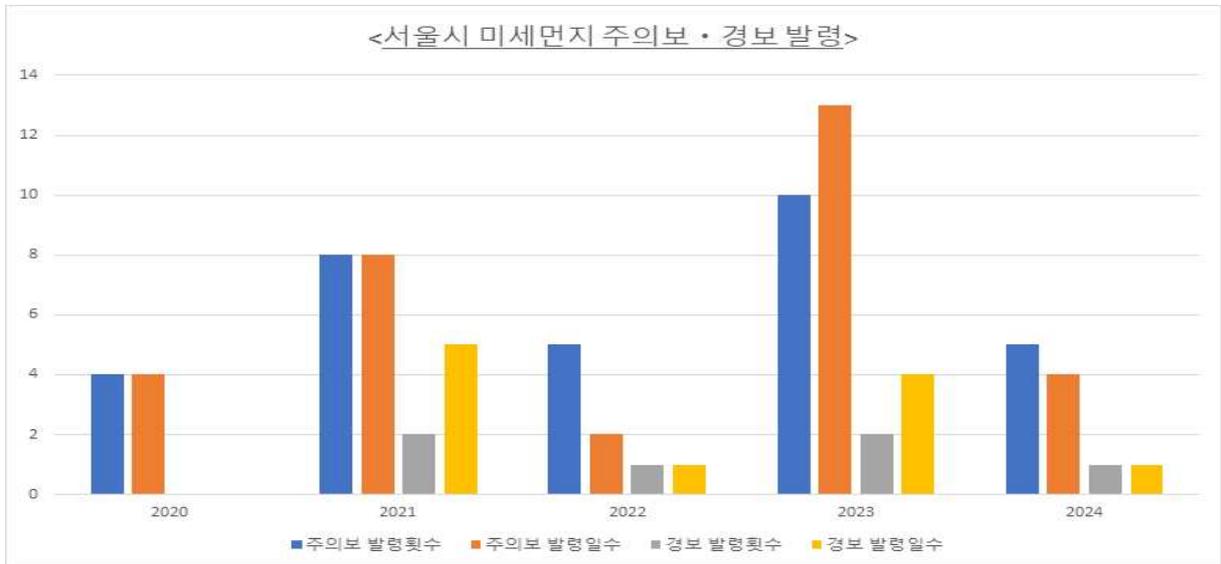
- 가로수는 일상 속에서 녹음과 단풍으로 국민들에게 작은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흡착 ▲소음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로수의 5)폭염완화 기능으로는 그늘막 보다 표면온도를 7℃ 더 낮추어 열 저감에 25%나 효과적이며, 또한 가로수 1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3.3kg으로 가로수 2,000주를 심으면 연간 406.6톤(자동차 170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임.
- 또한 40년생 나무 1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6)흡수량은 35.7g을 흡수할 수 있고 가로수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며, 도로변 가로수는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심 속 가로수는 “녹색혈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음.
- 한편,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세계 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지난해가 근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해였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역시 기상청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14.5℃로 평년보다 2.0℃

5) 2022 서울기술연구원, 열저감·열화상센터 분석결과

6) 출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서울 도심과 홍릉숲 대상으로 비교 조사, 2017)

높았으며, 종전 1위인 2023년(13.7℃)보다도 0.8℃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통계⁷⁾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발령횟수의 증가·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매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해 약 700만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분석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구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심 속 문제인 폭염·미세먼지 등 저감에 효과적인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원도시인 우리 구의 미관 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 구 가로수 현황은 2023년 기준 18,465주임.

7)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참고 자료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

·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 2. 가로수의 옮겨심기
-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3항 관련)

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

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 가로수의 수량 및 생육상태, 병해충 감염·고사(枯死)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수량 및 생육상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

시되어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 2)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니는지 여부
-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 6) 생태계 보전·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어야 한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할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했을 것
-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 7) 가로수의 수고(樹高: 나무높이)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심는 지역 기준

가. 가로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을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서

는 안 된다.

- 1) 도로의 갓길
- 2)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3)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 4)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해당 시설물 전선의 절연 처리 등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리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 4) 병해충 감염, 재해·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

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객토(客土: 새 흙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24.>

1. 가로수의 바뀌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삭제 <2024. 7. 24.>